

피고인석에서 바라본 재판

문민정부에서의 양심수 경험

맺는말

노태훈

1. 시작하면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1조 1항).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1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만 보장됐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았어야 할 양심수의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 과거와 조금도 변함이 없어.

그것은 새로이 탄생한(?) 문민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제한했던 과거 집권세력과의 명확한 단절을 선언하지도 실천하지도 못한 결과일 것이다.

지난 1988년부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에서 양심수, 장기수의 석방과 후원사업을 시작으로 인권운동의 길에 들어선 나는, 1993년 7월 불법연행 됨으로써 ‘문민정부에서의 양심수’를 경험할 수 있었다. 물론 이번이 첫번째 감옥행은 아니었지만 피의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수사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또 “운동을 하다보면 감옥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과거와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경험이었다.

게다가 인권운동을 하면서 자식이 갑자기 불법연행을 당해서 어찌할지를 몰라 찾아온 가족들에게 수사시 자신의 권리 수호를 위한 이리저러한 대응방법이나 약간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자문활동을 하기도 한 사람으로서, 이를 직접 실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민변으로부터 원고청탁을 받고 무척 고심을 하다가, 내가 겪었던 연행·수사·재판과정에서 아직까지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피의자, 피고인의 권리¹⁾와 소위 공안당국이 ‘간첩사건’을 만들어보려다 실패한 대표적인 사건 중의 하나를 겪으면서 느꼈던 법률집행 공무원과 사법부의 엄청난 반공이데올로기의 벽에 대해 두서가 없다라도 써보려고 한다.

2. 연행

1993년 7월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의 간사로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온 나는, 며칠 후에 있을 비엔나대회 참가 보고대회의 자료집을 만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7월 13일 그날 ‘인권운동 사랑방’ 식구들과 오랫만에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고 사무실에서 새벽녘까지 함께 일을 하다가 한여름 더위에 옷도 벗어젖힌 채 소파와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누워 모두 잠이 들어 있었다. 꿈 속에서 느껴지듯이 덜커덕 소리에 이어 “어느 놈이지”하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깡패 같은 사람들이 두리번대고 있어 순간적으로 ‘강도구나’ 생각하고 벌떡 일어나려 하는 순간, “어느 놈이 노태훈이야. 어 저놈이다”라는 소리와 함께 다짜고자 내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다. 같이 잠자던 동료들이 모두 일어나 “왜 그러나? 당신들 누구나? 영장을 내놔라. 소속이 어디나? 데려가는 장소가 어디나”며, 그래도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제법 알아야 할 것들을 요구했다. 목적만 못 알아내고

1) 경찰은 7월 13일 1차로 불법연행을 하고 영장발부가 여의치 않자 48시간 후에 석방을 한 다음 영장을 발부받아 15일 다시 연행을 했다. 이때 나는 조용환 변호사 시무실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이었고, 경찰은 별쇄사설이 기재되지도 않은 영장 표지의 복사용지를 내밀며 접행을 시도했고, 이것이 불법임을 지적하고 영장의 정본 제시를 요구하며 불법연행을 막던 조용환, 백승현 변호사에게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영장 열람, 소속, 데려가는 장소 등은 확인하였다. 적법한 내용을 확인한 동료들은 더이상 강경한 항의를 할 수 없었고, 그들은 사전에 내 물품들의 위치를 알고 있었는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몇 가지의 물품을 자기 것처럼 챙겼고, 나는 몸이 번쩍 들린 채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정말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런데 조금 지나서 알게 됐지만 우리는 모두 ‘멋지게(?)’ 속아넘어갔던 것이었다. 그들이 제시한 영장은 구속영장이 아니고 나의 집(인권운동 사랑방에 대한 것도 아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고, 소속, 이름, 데려가는 장소 등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원래 헌법 제12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하면 임의동행시에는 담당자의 소속, 직책, 동행장소를 반드시 고지하게 되어 있으며, 동행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 임의동행을 할 경우에는 6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며, 6시간 이내에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 장소로부터 나올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최초 불법연행된 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 우선은 석방했던 7월 15일 새벽 6시까지의 48시간²⁾ 동안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 구금되어, 그것도 잠 한숨 안 재우는 고문까지 당했으니 처음부터 완전히 불법으로 시작된 것이었다. 아마 과거 군사독재정권시 무소불위의 권위를 떨쳤던 공안경찰에게는 이런 법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았다.

어쨌든 1987년 박종철이 물고문으로 죽은 그 건물.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조그마한 육조 하나가 전부인 밀실에서 48시간 동안 강압적인 자백 강요의 수사를 받고 일단은 귀가 조치되었다.

불법적인 2차 연행은 더 어처구니가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이를 동안 못잔 잠을 설컷 자고 비엔나 인권대회를 준비하느라 함께 일해온 조용한 변호

2) 이제까지 경찰은 피의자를 연행한 후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는 것을 거의 관례처럼 해왔으며 많은 사람들도 이것이 적법한 것처럼 생각해왔다. 그러나 48시간 이내가 적용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긴급구속요건’에 해당할 경우 사후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규정해놓은 것일 뿐이다. 그러나 사전영장도 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끌고가서 48시간 동안 기두어놓는 것은 완전한 불법행위이다. 최근 경찰서유치장에 강제로 구금해두는 경찰의 관행에 쇄기를 박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도 있다.

사 사무실로 가서 그간 있었던 이야기, 경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낯익은 얼굴이 사무실로 불쑥 나타났다. 이틀 전 나를 연행해었던 그 수사관이었다.

“웬일입니까?”
“노태훈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다시 연행하러 왔습니다.”

“구속영장은 가져왔습니까?”
“물론 여기 있습니다.”

“아니 영장에 범죄사실, 적용법규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거 정본도 아니고 표지 복사용지 아닙니까? 이건 불법입니다. 제대로 된 영장을 가져오십시오 그때까지 제가 신변을 보호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당신 변호사가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거야.”
“다른 곳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법적인 공무를 집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이때 지난번에 등장한 우람한 체격의 깅폐(?)들이 들어타치고 지휘관인 듯한 사람의 “야 연행해”라는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협약한 분위기로 한마디씩 내뱉는다.

“이거 보아하니 나이도 어린 ××가 변호사라고...”
“이거 똑같은 놈들 아냐.”

“야! 변호사면 법이나 똑바로 알고 있어. 너 공무집행 방해로 똑같이 될 거 야.”

우당탕탕.....

“이거 왜 아래요.” “저리 비켜.” “너 죽지 않을려면 조용히 해.”
을바른 법집행을 감시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백주 대낮에 벌어진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나는 서로의 공치사를 하느라 회회덕거리기에 여념이 없는 깅폐(?)들의 차에 실려 다시 그 방으로 끌려갔다.

3. 수사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헌법 제12조 2항)

내가 받은 경찰에서의 수사는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자신들이 이미 그려놓은 그림표에 일치시키는 ‘짜맞추기식 수사’였다. 그림표를 그리는 데 필요한 여러 정황은 있었지만, 그것을 입증할 그 어떠한 증거도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은 본인을 잡아다가 ‘족쳐서’ 필요한 자백을 받아내는 것밖에 없었다.

애초에 경찰(더 정확히 말하면 경찰청 보안국)은 출소한 미전향 장기수들이 오로지 김일성에게 충성을 하기 위한 지하조직인 ‘일심회’를 조직해 활동했으며, 이 조직이 북한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 일본 조총련과 연계되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해외연락과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그림표를 완성해놓았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객관적 진실과 다른 완전한 오해였다.

대부분의 공안조직사건의 경우 바로 이런 오해(?)가 경찰의 무리한 수사의 출발이자 근거가 되는 것이다.

경찰의 대공수사 퍼트(지금은 보안 퍼트)에는 소위 기획수사팀이라는 것이 여러 개 있다. 이 기획수사팀들은 정보부서에서 올라오거나 자체 수집한 정보에 기초해서 무언가 의심이 갈 만하다고 판단되면, 아니 정확히 말해서 사건이 될 만하면 내사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미행, 도청, 프락치 활용 등의 불법적 방식들이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수사보고’라 하여 자기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상부에 보고하게 되고, 상부에서는 ‘수사보고’가 쌓여지고 여러 정치적 판단이 끝나면 안기부에 조정업무를 받고 피의자를 데려다 ‘밀실 수사’를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서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 수사팀 구성원들의 경력이다. 보통 수사팀의 팀장급(계장급)과 과장급들이 수사파트의 ‘꽃’인데, 이들은 수사경력이 대부분 20년 이상 대공수사관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최소한 1970년대 유신정권 때부터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사람들이며, 일제시대 고등경찰의 수사방식과 체계를 ‘정통적’으로 이어온 사람들이다. 또 왕년에 정권안보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온 ‘조작간첩’ 제조기들로 고문을 밥먹듯이 해온 사람들이다. 나를 수사하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화려한 과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곤 했다.

이들은 공안기구 축소라는 정치적 이슈가 제기되거나 그럴 조짐이 보일 때면 자신들의 입지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이를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왜곡하여 상부로 보고하고 상황을 조작하기도 한다.

재판부에 제출된 나의 3~4년간에 걸친 수사기록을 보면 아주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내가 민가협에서 장기수 후원사업을 할 때 외국의 후원운동가나 교포 등을 여러 차례 만나면서 주로 호텔 커피숍 등이나 사무실을 이용하였고, 출소 장기수를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사실들이 수사보고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다. “일본의 반한인사 ××××와 연락되는 ×××에게서 ×× 호텔 커피숍에서 의문의 내용물이 담긴 봉투를 수수함” “미전향 장기수들의 동태를 파악하려 입국한 전 간첩 ×××에게 출소 미전향 장기수들의 전국 연락처를 제공하고 동행 방문하여 접촉을 가능케 해준 편의를 제공하고” 어느 행사에 사용하려고 출소 장기수의 육성을 녹음한 테이프는 내가 조총련을 통해 김정일에게 보내는 ‘충성서약’의 증거로 둔갑되었고, 심지어 출소 장기수들과 야유회를 가서 놀았던 장면은 ‘일심회’라는 지하조직의 결성식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초기 보고에 의하면, 당시 나는 누가 보기에도 ‘간첩’임이 충분했다. 실제 내가 처음 연행당했을 때 나를 아는 모 국회의원이 내무부장관에게 사실 진위를 묻자 “틀림없는 간첩사건이다. 이번 일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점잖은 충고를 할 정도였으니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이들 대공수사관들이 갖고 있는 과도한 반공이념체계이다. 이들은 자신들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는 전사이자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자긍심과 의무감이 가득 차 있다. 이들에게는 ‘김일성이 호시탐탐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분단된 상황’ 아래서는 정부가 좋건 나쁘건간에 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는 ‘김일성’을 도와주는 일이며, 북한의 고도전략에 운동권 대부분이 이용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또 다른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니 이런 색안경을 쓴 사람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사실 그 자체로 보일 리 만무한 것이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던 것이 몇 가지지만 반복되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로 굳어져버리는 것이다.

내가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이와 같은 웃지 못할 일화가 있었다. 경찰이 나의 집을 수색 압수한 물건 중에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성경책’이 있

었다. 나는 이런 것이 입수당했는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다. 또 경찰이 오랜 내사과정에서 확인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집 식구들 중에는 교회 문턱에도 가본 사람이 없었다. 수사가 며칠째 계속되던 날 경찰이 나를 '간첩'으로 확신할 수 있었던 여러 정황 중에 출소 장기수들과의 관계, 외국여행 등의 조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명확한 진술이 나오지 않아 한참 험악해져가고 나도 무척이나 긴장되어 있을 때였다.

"야 이 새끼야! 그렇게 여우새끼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가도 소용없어. 마 우리가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데."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갖고 기소를 하든 뭘하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는 거요?"

"너 종교가 뭐야?"

"종교는 없지만 어머니이나 집안식구들이 불교를 믿으셔서 가끔 따라다니는 정도요."

"그럼 이건 뭐야? 왜 교회도 안다니는 집 장롱 깊숙한 곳에 이게 숨겨져 있어! 난수표는 어디 있어?" 그들은 그 성경책을 난수표를 해독하기 위한 교본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다소 어처구니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색안경의 정도는 이게 보통 수준이다. 출소 장기수들과의 만남, 도청한 전화내용 중의 말 한 마디, 교도소 면회, 양로원방문, 외국여행, 수첩에 적힌 잘못된 전화번호, 내가 알고 있던 '조선노동당사건' 관련 구속자들과의 관계, PC통신 사용 용도, 수년간 개인계좌로 오고간 돈의 내역 등등 그들이 알고 있는 나의 행적 모두는 이미 간첩 행위의 일환으로 짜맞추어져 있었고, 수사는 모두 이를 '자백'받기 위한 것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성경책'은 어머니 친구가 목사가 되어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선물이었고, 어머니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성경을 그냥 방에다 놔둘 수가 없었고 그분 정성 때문에 버릴 수도 없어서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런 대공경찰들의 '색안경으로 인한 엄청난 오해'를 유지시켜주는 안전판의 문제이다. 어떠하든 걸어놓을 수 있는 국가보안법 그리고 공안사건의 경우 100%의 유죄를 선고해주는 '믿음직한' 재판부가 바로 그것이다. 실제 내 사건의 경우 간첩 혐의로 연행, 수사를 받았지만 그것이 객

관적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고 공소유지가 어렵게 되자 단순 이적표현물 소지로 기소되었고 재판부는 현재 2심까지 유죄를 선고했다.³⁾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몇 건의 방북기도사건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받았지만 단순 이적표현물에 의한 구속·기소는 나의 경우가 최초였고, 그것은 국가보안법의 무자비한 남용의 신호탄이기도 했다. 끈이어진 '사회주의과학원사건' '김삼석, 김은주남매 사건' '혁사노사건' '민정연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한 표현의 자유까지도 규제하려는 'PC통신 김형렬사건' '희망새 극단사건' '일터, 힘, 일빛 출판사 탄압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위 사건들에 대해 재판부는 이제까지 진행됐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다음으로 수사시 나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수사대응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피의자가 인신이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의 강요나 고문 등으로부터 혼자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그래서 근대 시민법에는 묵비권이라든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강요에 의한 자백에 대한 증거 불인정 등을 명시해놓고 있다. 하지만 감옥 안에서의 은어처럼 '현법 알기를 X으로 아는' 대한민국의 대공경찰에게 수사를 받을 때는 자기방어는 거의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지만 과학수사는 고사하고 사전에 증거를 확보한 후 인신을 구속하여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잡아넣은 후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위주로 하는 많은 사건의 경우 참다못해 단순하게 인정한 사실이 재판시 유죄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니 목숨을 걸고서라도 자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경찰들은 자신들의 색안경으로 판단한 간첩 몇 놈을 잡아놓고 아주 드의양양해 있었다. 그것도 겁만 주면 모든 것을 아는 대로 술술 털어놓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조직원(?)인 출소 장기수들 몇 명도 왜곡된 정보로 상부를 설득하여 테러다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자기들이 그려놓은 그림을 인정하게 하는 자백만 받아내면 되는 것이다. 변호인 접견은 대충 막아내고, 조금만 잡아족치면 정말 '누워서 떡먹기'였을 것이다.

나는 남영동 밀실로 연행된 후, 그들이 내 입수물을 뒤지느라고 수사가 진행

3)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기각되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되지 않은 약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⁴⁾ 그때 나는 이전에 민가협에서 일하면서 간접 경험했던 여러 조직사건의 수사방식, 장기수 석방운동을 하느라 유심히 연구했던 조작간첩이나 공안사건 공소장의 문구와 체계들, 또 헌법이나 형사소송법 등에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의 권리 등을 하나씩 더듬어보았다. 그리고 나중을 위해서 필요할지도 모를 고문이나 나에게 불리한 강요의 증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 등을 같이 생각해보았다.

일반적으로 대공경찰은 피의자를 연행한 후 우선 다짜고짜 때린다거나 협박 등의 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놓는다. 바로 심리적 위축감을 형성해놓기 위해서이다.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자포자기의 심정을 만들어놓으면 일의 반은 끝낸 셈이다. 다음으로는 자신들이 파악한 내용보다도 엄청나게 큰 범죄사실을 이야기하고 모두 다 알고 있으니 털어놓으라고 한 후,⁵⁾ 별것이 나오지 않으면 협박과 화유로 더욱 불안한 심리상태를 만들어놓는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원래 목적했던 그림표 짜맞추기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때쯤이면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정말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인정해주자'라는 심리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나에 대한 수사도 물리적인 구타를 제외하고는 전혀 다를 바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이 나에 대한 물리적인 구타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한 가지는 내가 인권운동을 해왔고, 나이 많은 출소 장기수들을 함께 데려다놓은 처지라 주변에서 문제제기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실제 내가 연행되자마자 바깥의 많은 분들이 정말 현신적으로 관심을⁶⁾ 가져주고 이것이 곧장 경찰 상부 등에 문제제기가 되어 담당수사팀은 상당한 부담을

4) 경찰은 처음에 내 압수물을 뒤지는 것을 상당히 중시했다. 그들은 정말 그 중에서 조직강령이나 난수표와 같은 간첩을 입증할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올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5) 예를 들면 "너 김일성에게 충성 서약을 하고 편지 보낸 것 다 안다." "너 노동당에 가입한 것 다 안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때 조금 의지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 그건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 여러 사실들을 진술하게 되고, 이는 또 다른 공소사실로 되어 스스로를 움어매는 일이 많이 있다. 대공경찰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6) 인권운동 내에서는 내 사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효과적이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모범이 되고 있다. 나와 같이 근무하던 사람방 식구들은 '노태훈사건 속보'라고 하여 시시각각 진행되는 상황에 대하여 FAX로 각계와 단체, 개인 등에게 알려왔고(이것이 지금 인권운동 사람방에서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 FAX신문의 원조이다), '유엔인권대회공대위' 일을 함께 했던 분들은 외국 인권단체에 사실을 알리는 보고서를 발송하여 수사진행 도중 청와대, 내무부, 경찰청 등에 수백 통의 외국 인권단체와 개인의 항의편지가 올 수 있게 만들었으며, 천정배, 조용환, 이오영 변호사께서 수사기간 동안 순번을 짜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접견을 왔다.

가졌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확보한 정황으로 보아 '조직사건' 하나 만들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나를 담당할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수사관은 아주 여유있고 자신있는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물론 처음부터 반말이었다.

"너를 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다. 나는 너 행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이제부터 나랑 '진실'만을 이야기하자. 나는 바보같이 고문 같은 것은 안한다. 너에 대한 증거는 완전히 확보되어 있다. 자! 지금부터 몇 년간의 너의 행적을 이야기해봐라."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죄도 없는 사람 데려다놓고 무조건 행적을 이야기하나니. 먼저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와 있는지 이유나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이나 변호인이 오기 전에는 한 마디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병신 같은 새끼 육감하고 앉았네. 야 이 새끼야, 우리가 할 지랄이 없어서 너랑 농담 따먹기 하는 줄 알아. 이 새끼 신사적으로 하려니까 안되겠네!"

순간 '드디어' 시작이다. 여기서 꺾이면 안된다.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다'라는 생각에 나도 큰소리로 대들었다.

"왜 큰 소리로 윽찌거리요. 그래 마음대로 해보쇼. 엄한 사람 데려다가 뭐 하는 거요?"

그리고는 이내 날아올 주먹을 기다리는데 주먹 대신 큰 욕소리만 계속되는 것이었다.

'어 이상하다. 왜 이러지. 뭔가 모르지만 이자들은 나를 고문할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에 이르자 다소 불안하기는 하였지만, 나는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빠지지 않을 고지를 절령한 셈이었다. 이젠 바깥에서 누가 올 때까지 시간을 별면 될 것 같았다. 도대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한참의 실랑이가 오고가다가 바깥에 있는 분들의 노력으로 천정배 변호사와 가족들을 접견할 수 있었다.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과 애인이 함께 들어와 있다는 것을 듣고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다. 공안당국에게는 여론에 밀려 석방은 해주었지만 오랫동안 눈에 가시었던 출소 장기수들, 후원사업을 하느라 사회운동권에서는 누구보다도 출소 장기수들과 가까운 나, 나의 두 차례에 걸친 일본여행 등 몇 가

지의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 간첩단사건이다. 출소장기수—암약 고정간첩, 노태훈—조총련에 포섭, 노태훈 애인—불고지,’ 조작간첩 석방운동을 할 당시 보고 정리했던 1970, 80년대의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간첩단 일망 타진’이란 신문스크랩이 동시에 연상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말 한 마디’로 스스로를 ‘간첩’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 이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우선 그들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을 최대한 줄이고 내 손으로 쓰는 자술서를 일체 거부하면서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의 실체를 알아내야 했다. 또 한 가지 내가 진술하고 그들이 마음대로 적는 심문조서를 내가 말한 대로 고쳐주지 않으면 지장을 찍지 않은 것이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들은 역시 나에게 엄청난 진술을 할 것을 강요해왔다.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인이나 교포들이 조총련이라는 증거(?)⁷⁾를 내밀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진술하라거나, 옆방에 있는 영감들이 ‘일심회’라는 조직이 있다고 진술했으니 숨기지 말라거나, 조선노동당사건 관련자들이 발행한 수표가 나의 구좌에 입금된 이유를 밝히라거나, 일본에서의 행적이 일본 경시청을 통해 보고됐으니 그대로 진술하라거나 하는 것들이었다. 게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자 급기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네 머리를 폭로하겠다. 그러나 한 가지만 인정해라. 다른 건 눈감아주겠다”는 회유성 협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여기서 한 마디만 실수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떻게 해서든 엉여질 판이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당해온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내가 일본을 갔을 때 소위 공안당국에 의해 반한인사로 찍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서화전’ 장소에서 만나 수인사를 나눈 적이 있고 여럿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너 누구누구 알지?”

“모릅니다.”

“여기 네가 갖고 있는 이 사람 말이야.”

7) 그 증거란 발행처도 명확하지 않은 신원내사 결과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거기에 의하면 그렇다는 단정은 없었지만 조총련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만 있을 뿐이었다. 심지어는 수사 도중 자신들이 원하는 진술을 얻어내지 못하자 일본 경시청에서 온 조회라는 허위 문서를 내밀면서 진술을 강요하기도 하였다.

“아, 그 사람이요. 인사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

“웃기고 앉았네. 너 이 사람한테 무슨 이야기 들었잖아. 그리고 뭐 받은 것 있잖아.”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그럼 처음 본 사람이랑 사진은 왜 찍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 한국을 떠난 지 오래된 교포들인데 한국이야기 안물어봤단 말이야?”

이때 내가 분위기에 위축되거나 아무것도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넘기려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요즘 한국은 이러이러해요”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으면 내 공소장에는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한 죄목이 붙어 나는 지금도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는 매일매일 접견을 외주신 변호사들께 많은 조력을 받으며, ‘가시밭길보다 혐난한 여정’을 마치게 되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수사시 변호인의 조력에 관한 문제이다. 특히 대공수사와 같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심정에서 변호인과의 만남은 실제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와 다름 아니다. 나의 경우도 세 분 변호사들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접견이 없었다면 과연 나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곤 한다. 특히 피의자의 권리가 무엇인지, 경찰의 수사방식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물론이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수사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위축감’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거의 유일한 수단이 변호인 접견이라는 점이다.

어찌됐건 결국 나는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야! 이 더럽고 치사한 너구리 같은 새끼야, 대공수사 20여 년 동안 너같이 아비한 새끼는 처음봤다. 잘먹고 잘살아라. 언젠가는 내 손에 다시 올 줄 알아라”라는 ‘이상한 학복선언’(?!)을 듣고,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소지, 배포죄’의 의견이 붙은 수사자료와 함께 검찰로 송치되었다.

그때 나의 몸무게는 10Kg 이상 빠져 있었다.

4. 신념에 찬 공안검사와의 만남

피의자가 수사에서나 자신을 방어하는 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검찰에서의 조사이다. 원래 경찰에서 작성된 조서는 재판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검찰조사는 부인을 해도 고문 등의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자신이 쓰거나 진술한 것이 확인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안검사들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온 바로 그날부터 며칠간 숨들릴 틈도 없이 계속 불러내어 가장 중요한 신문조서를 서둘러 마쳐버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들은 구치소로 송치되어 여러 사람들을 만나거나, 가족들의 면회를 하고 나면 일단 숨을 들리고 여유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유지되어온 “심리적 위축감”的 악발이 떨어지고 자기방어에 적극적이 되기 때문이다. 검사들은 피의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는커녕 공소유지를 위해 이런 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검사들이 피의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또 하나의 일이 있다. 다른 이 아니라 바로 이 기간중에 변호인의 접견을 원천적으로 방해하는 것인데, 형식적으로는 허용해놓고 실질적으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감옥에서의 은어로 일명 ‘불러 뽕’이라고 하는데 검사는 자신이 조사할 시간에 구치소에서 불러내오는 것이 아니라 아침부터 불러내어 범늦은 시간에 돌려보낸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변호인이나 가족들은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접견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침부터 불러나온 피의자들은 구치감이라고 하는 0.5평 정도 되는 조그만 방에서 서너 명씩 수갑을 채워놓거나 포승으로 풍풍 끌어놓은 채 대기시키게 된다. 또 다른 고문이 아닐 수 없다. 소위 악독한 검사들은 말 안듣는 피의자들을 이런 방법을 주로 써서 골탕을 먹이곤 한다. 나 역시도 일주일이 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치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검찰로 처음 송치된 날 역시 나는 경찰에서 수사받는 동안 너무 지쳤으니 며칠 후에 조사를 받겠다는 나의 입장과 그럴 이유가 무엇이냐 뜻뜻하지 못하니까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검사의 입장과의 신경전은 계속되었다. 검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목비권과 같

은 피의자 인권을 고지하는 임무는 전혀 안중에도 없이 오히려 목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나에게 ‘치사한 인간’ ‘무언가 숨길 것이 있어 의도적으로 신문을 회피하는 인간’ 등으로 몰아붙였고, 그냥 주고받는 대화내용으로 이야기한 것을 1차 진술조서로 작성하여 내 앞에 내놓으면서 내가 한 말이니 읽어보고 지장을 찍으라는 것이었다.

조서를 읽어보니 내가 한 말은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으나 “도대체 나를 왜 조사하는 것인가” “나는 경찰 수사기간 동안 한 번도 구속영장을 본 적도 없고 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들은 바가 없다.” “검사도 나에게 그런 것을 전혀 말하지도 않고 왜 일방적으로 조서를 받으려고 하느냐” 등과 같은 검사 자신에게 불리한 말은 한 마디도 기록하지 않은 채, 전체적으로 의도적인 방법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진술을 거부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었다. ‘칼 자루 전 사람 마음이었다’.

결국 검찰의 1차 신문조서는 나의 지장이 찍히지 않은 채,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도 지장을 찍지 않는 악랄한 사람이란 뉘앙스를 담는 검사만의 작품으로 마무리되었다.

검찰에서의 수사는 경찰 조서를 그대로 옮겨 수사계장이 타자로 치고, 나는 읽고 문구를 고쳐 지장을 찍는 일을 반복하고 끝나게 되었다.

조서작성이 마무리될 때쯤 이적표현물 소지 배포로 기소하겠다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나는 검사에게 “이거 너무 유치한 것 아닙니까?” “간첩 혐의로 조사하다 아니면 풀어줘야지 치사하게 이미 시중에 수천 권이 배포된 장기수 자료집을 가지고 기소하겠다니 이게 무슨 놈의 문민정부입니까? 이게 노골적인 정치적 탄압 아닙니까?”

나의 이런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검사의 일장 연설은 시작되었다.

“정부가 군부이든 문민이든 상관없이 분단된 상황에서는 대공부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개혁이니 뭐니하면서 사회가 풀어지고 있으니 자유민주주의의 수문장인 우리들은 남에게 욕을 먹더라도 수문장 역할을 해야 한다. 네가 간첩이 아닌 것은 내가 안다. 하지만 꽃이 냄새를 피워야 나비가 날아오듯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냄새를 피우니 간첩들이 오는 것이다. 따라서 꽃을 꺾어버리면 된다. 너는 모르겠지만 그간 너는 간첩에게 이용당한 것이다. 너를 잡아넣는 것은 인권운동을 가장한 ‘빨갱이 지원활동’에 대한 경고이며, 겁

없이 날뛰는 출소한 빨갱이들에 대한 경고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 나는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살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민중을 괴롭힌 김일성 추종세력을 모두 잡아다가 처단하기 위해서다.”

나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불쌍하다는 심정만 가질 뿐, 더이상 할 말을 잊고 그 자리를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5. 기소에서 2심까지 진행된 재판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이전까지 무죄로 추정되는 피고인들은 하얀 한복이나 청색 죄수복을 입고 공개된 재판장에 선다. 구치소에서 법원을 오고갈 때도 포승으로 굴비처럼 엮여서 끌려간다. 집행유예나 무죄판결을 선고한 때도 판사의 말이 떨어지는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묶여 구치소로 가서 검사가 늑장을 부리며 범늦게야 발부한 석방지휘서가 구치소로 도착해야지만 나올 수 있다.⁸⁾

가끔 외국영화를 보면 피고인이 양복을 입고 나와 변호사 옆에 앉아있다가 무죄선고가 나면 만세를 부르고 가족과 포옹하고 그 자리에서 변호인과 악수를 나누며 걸어나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디까지나 영화 속의 이야기일 따름이다.

형이 확정되기까지 무죄추정을 받아야 할 미결수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불구속을 원칙으로 할 때 인권유린의 여러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구속의 경우에도 도주의 가능성만 봉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편의만을 강조하여 형이 확정된 기결수와 거의 동등한 처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 쓰이지 않는 법조문에 불과할 뿐이다.

검사는 과거 민가협에서 활동할 때 여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발행한 출소 장

8)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조용환 변호사와 상의 끝에 미결수에 대해 수인복을 입히는 것과 관련해 혈법재판소에 혈법소원을 제출했으며, 집행유예 후 즉시 석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기수의 자료집인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란 책자와 출소 장기수가 죽기 전에 자신의 유고집 형태로 남긴 『옥중일월』이라는 시조집을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짓고, 이를 제작·소지·배포하였던 사실을 기소하였다.

변호인들과 나는 첫째, 수사기관의 불법적 행위와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가진 사건의 본질, 둘째, 위 책자의 이적성 여부에 대한 반론,⁹⁾ 셋째, 책자의 이적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지 목적이 인권사업의 일환이었다는 점, 넷째, 국가보안법 폐지의 당위성, 다섯째, 재판부 판단근거에 국제인권기준을 적극 도입할 것¹⁰⁾ 등을 제기하였다.

재판은 아주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다. 과거와는 전혀 시각이 바뀌지도 않았고 국제규약이 뭔지도 모르는 듯한 재판부의 입장과 사건이 너무도 단순하고 완전한 시각차이로 달리 바라볼 수 있는 기소사실에 대해 변호인과 검찰측은 다른 수단을 동원할 필요 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예상과 달리 없이 검사의 기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국민의 자유권을 신장시킴으로써 내부적으로 자생력이 있는 민주적 사회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특수상황을 설정하고,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함으로써 기존의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전통적 관념이 지배하는 사법부의 시각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론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인이다.

단지 1, 2심 재판 선고에서 한번쯤은 되짚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 소개해보려고 한다.

1심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9단독, 주경진 재판장)는 “… 책자들의 내용은 이적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9) 변호인단은 이미 그 책이 몇 년 전부터 시중에 수천 부 배포된 것을 당시는 문제삼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문제삼고 있다는 점과, 시중에 나온 소설이나 책자 등의 내용과 하등 다른 바가 없다는 점, 그리고 정부가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거기서는 북한 원전까지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10) 대한민국정부는 1991년 7월 유엔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가입함으로써 동 규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1992년 7월 인권이사회에서의 정부 최초보고서 검토시 인권위원회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분단상황’이라는 특수상황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고, 시민의 자유권, 특히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다(자세한 내용은 천정배, ‘국제적 비판에 직면한 한국의 인권 상황’,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역사비평사, 1993 참조).

유죄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간 인권운동을 통해 사회에 여러가지 기여를 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결국 이 선고에 의하면 나는 인권운동 때문에 구속됐고, 인권운동 때문에 석방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음을 재판부가 시인한 것이었다.

2심 재판부(서울지법 항소3부, 변동걸 재판장)가 유죄의 논리적 근거로 밝힌 ‘야구방망이론’은 재판부의 시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인권운동 하는 사람들끼리는 가끔 웃으면서 농담으로 써먹는 말장난 논리이기도 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출판물이 이미 언론기관에도 배포된 것이고, 정부 기관에서 운영하는 북한자료센터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만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자의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구선수가 야구방망이를 든 것과 폭력단원이 야구방망이를 든 것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

결국 ‘같은 물건이라도 소지자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함으로써 자의적인 법집행이 문제가 되는 한국의 인권현실에 째기를 박기는 거佞 합법적 근거를 마련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재판부는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고 외국의 인권단체가 아무리 문제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여전히 위협적 존재이고 어떤 법이든 그 나라의 특수한 환경에 따르므로 그들의 문제제기에 영향을 받을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인권의 보편성’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실로 국제적인 망신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6. 글을 마치면서

얼마 전 내가 잘 아는 분이 안기부의 한 기관원을 만났을 때 내 사건에 대해 묻자 그 사람은 “노태훈씨는 지금도 경찰의 모기관에서 내사를 하고 있다. 공안기구에 한 번 찍히면 10년은 따라다니는 것이 수사 파트의 생리이니 감안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들은 어쩌면 지금도 자신들의 색안경을 통해 바라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건수’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나 말고도 수십 명, 수만 명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다. 국민의 자유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자생력있는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역사적 노정에 크나큰 장애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넘어야 할 고지는 ‘북한이 있는 한 국가 존립을 위해 국민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리 내부의 ‘전통적 반공통치이념’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국가의 존립은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경찰, 검찰, 사법부에 의연히 버티고 있는 이 ‘높은 벽’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변화나 조치들은 모두 ‘기만에 찬 말장난’에 불과할 것이다.

“피고인석에서 바라본 재판”을 쓰다보니 경찰에서의 수사 부분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게 되었다. 사실 이제까지 공안사건의 경우, 검사의 공소제기에 그냥 고개만 끄덕여주고 단지 ‘징역 몇 년’만을 결정해주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조금도 기대할 것이 없는 재판부에 대해 뭐 특히 할 말이 없기 때문이었다. 아울러 그간 민가협 등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상담과정에서 느꼈지만, 경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그들이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 잡히기만 하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쿄걸이 정도를 귀걸이로 만들어줘’ 버리거나 아무 문제도 될 게 없는 것을 강압에 의한 동의로 죄인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 글이 그런 사람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한번쯤 읽어볼 만한 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아울러 이 지면을 통해 ‘갇힌 자’들의 인권 수호를 위해 경찰서, 법원 등으로 바쁘게 뛰어다니는 민변 변호사들께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고, ‘갇혀 있는 자’에게는 변호사가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내 경험으로 알게 된 소중한 결론을 한번쯤 더 환기시키면서 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다.

(인권운동 사랑방 기획조종실장)

활동소식

한일법률가교류회 참가 보고서

김 제 완

1. 머리말

지난 1994년 3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일본의 코베(神戸)와 오사카(大阪)에서 한일법률가교류회가 개최되어 한국에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30여 명이 참가한 바 있다.

이미 대한변호사협회나 각 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형태의 한일변호사간의 교류가 있어왔으나, 금번 한일법률가교류회는 한국과 일본의 인권활동에 노력하고 있는 변호사들 내지 진보적 법률가들이 공식적으로 개최한 모임이라는 점, 따라서 인권과 변혁운동의 경험과 현황, 과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국 변호사간의 일반적 이해와 친목의 중심인 여타의 한일간 변호사 교류와는 차별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변호사운동은 과거 독재정권하에서 정치적 탄압으로 구속된 많은 재야인사, 학생 및 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적 구조를 계기로 하여 시작되어 이들 변호인단이 중심이 되었던 정법회(正法會)가 1985년에 구성되고 1988년 민변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비로소 시국사건 변론활동뿐 아니라 연구, 조사, 출판, 연대활동을 조직적으로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1921년 코베 노동쟁의 탄압사건을 계기로 하

여 자유법조단(自由法曹團)¹⁾이 결성되어 활동한 것을 비롯하여, 자유인권협회(自由人權協會),²⁾ 민주주의과학자협회법률가부회(民主主義科學者協會法律家部會),³⁾ 청년법률가협회(青年法律家協會),⁴⁾ 일본노동변호단(日本勞動辯護團),⁵⁾ 민주법률가협회(民主法律家協會)⁶⁾ 등 수십 년의 역사와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축적된 많은 법률가운동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된 단체⁷⁾ 또한 적지 않다.

따라서 법률가운동단체로서 유일한 임의단체인 민변만이 활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수많은 법률운동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단체가 변호사뿐 아니라 법학자, 노동자, 일반 시민 등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일본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번 한일법률가교류회를 준비하면서 민변 내부에서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교류의 상대방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으며, 이 문제는 앞으로

1) 자유법조단은 1933년 변호사들에 대한 자격박탈 등 탄압으로 1933년 활동이 중지되었다가 일본 패전 직후인 1945년 11월 10일 재건되어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현재 회원은 약 1,400명 정도이며 전국에 많은 지부를 두고 있고 기관지로서『자유법조단통신』(旬刊)을 발간하고 있다. 과거 많은 정치적 사건과 노동쟁의 관련사건의 변론을 담당하였으며, 악법개폐운동 등을 벌여왔다.

2) 자유인권협회는 1947년 결성되었으며 회원은 변호사, 기자, 학생, 일반 시민 등 약 7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관지로서『인권신문』을 발간하고 있고, 정보공개제도의 확립, 국제인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3) 민주주의과학자협회법률가부회는 1946년 군국주의, 국수주의의 반성으로 설립된 민주주의 과학자협회의 부회로서 활동하다가 1957년 독자적인 조직으로 되었다. 회원은 약 800명이고 기관지로서『법의 과학』(연간)이 있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주 활동대상으로 한다.

4) 청년법률가협회는 1955년 반해운동을 계기로 결성되었으며, 회원은 약 2,500명이고 전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기관지로서『청년법률가운동』(월간)이 있다. 반해평화운동, 반공해환경운동, 외국인인권문제 등에 주력하고 있으며, 1967년 보수세력의 공격에 의해 재판관부회가 해산된 바 있고, 현재는 변호사, 학자 공동부회와 사법연수생으로 구성된 수습생부회가 활동중이다. 미야모토 판사 제임용 거부사건, 사카구치 수습생 파면사건 등이 모두 청법협 관련사건이라고 한다.

5) 일본노동변호단은 1957년 결성된 총평변호단이 총평 해산으로 인하여 1989년 명칭변경된 것이다. 회원은 약 1,300명이고 기관지로서『노동자의 권리』(계간),『총평변호인단통신』(월간)이 있으며, 근래에는 과로사문제, 정리해고문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6) 민주법률가협회는 1956년 결성되었으며 회원은 노동조합 약 200개, 사회단체 약 50개, 변호사 약 360명, 법학자 약 30명 등이 있고, 기관지로서『민주법률』(계간)과『민주법률시보』(월간)가 있다. 일반 노동자문제를 비롯하여 과로사문제, 여성근로자문제 등에 주력하고 있고 조세, 공해, 소비자문제와 악법개폐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7) 기타 단체로서는 국제민주법률가협회(IADL)의 일본 지부인 일본국제법률가협회(JALISA, 회원 약 530명, 기관지 월간『인터큐리스트』), 일본 사회당 관련 법률운동 조직인 사회문화센터(회원 약 500명), 자유법조단, 총평변호단, 청법협, 법률회계노동조합 등의 단체 가맹으로 1961년 결성되었던 일본민주법률가협회(기관지 월간『법과 민주주의』) 등이 있다.

도 한일변호사 교류의 방식과 성격, 교류범위 등을 결정해나가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한일법률가교류회'라는 다소 모호하면서도 포괄적인 명칭의 이번 교류회에는 일본측에서는 변호사와 일부 법학자를 중심으로 참여했고, 그 토의주제도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하였으므로 교류회 자체는 양국 참가자들간에 큰 괴리감 없이 진행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법률가운동의 가장 큰 특색이 상황과 과제에 따른 다양한 조직결성과 학자와 일반 시민, 관련 사회단체 등과의 강한 결합에 있다고 본다면, 금번 교류회를 통하여 우리측에서 일본 법률가운동의 중요한 부분 중의 일부를 경험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은 차후 한일간 법률가들의 교류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 극복되리라고 생각된다.

2. 교류회의 연혁과 준비과정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변호사)⁸⁾들이 교류하게 된 것은 1991년 민변 제4차 정기총회에 일본의 '제2회 아시아태평양법률가회의(일명 COLAP II)' 실행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관하여 '한국·일본의 진보적 변호사운동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1991년 9월 동경에서 개최된 COLAP II에 민변 소속 19명의 변호사가 참여하였으며, 1992년 9월 경주에서 한국의 민변과 일본의 민주법률가협회가 공동으로 '한국·일본의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여 인신구속제도, 노동자의 단결권, 공해병과 공해소송 등에 관한 분과토론 및 종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책임에 관한 전체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⁹⁾

금번 교류회는 지난 경주회의를 민변측에서 준비한 데 대한 응답으로서 일

8) 용어에 관하여, 시국사건, 노동사건 등을 위주로 하는 변호사들만이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아니므로 '인권변호사'라는 통용되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으며, 민변이 이념적인 의미에서 진보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진보적 변호사'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교류회의 상대방인 일본측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진보적 법률가(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9) 한·일간 진보적 변호사들의 교류의 연혁과 내용에 관하여는 박찬운, 「한국·일본의 인권현안에 대한 공동토론회보고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창간호, 역사비평사, 1993, 70쪽 이하 참조

본측에서 준비한 것이다.

1993년 12월 일본측의¹⁰⁾ 일정 및 주제에 관한 제안이 있었으며, 몇 차례 수정을 거쳐 1994년 1월 일정과 주제를 확정하고 우리측은 발제자를 내정하여 준비하도록 하였고, 발제문이 완성된 후 민변 금요세미나에서 3주에 걸쳐 각 주제에 관해 발제와 토의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발제자들이 발제문을 보완한 바 있다.

한편 한일변호사교류회는 별개 문제이나, 민변의 많은 변호사들이 일본을 방문할 계획임이 알려지자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민권협) 등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 등에 관하여 강연해줄 것을 요청하여, 민변에서는 이를 수락하고 한일변호사교류회 일정과 연결하여 강연을 하기로 하였으며,¹¹⁾ 재일교포들로 구성된 일본내 민족운동단체들과의 교류체의도 받아들여 1994년 3월 28일 '관서지방 민족운동가단체와의 교류회'라는 명칭으로 재일한국인과 교류도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교류회의 준비과정에서 상황이나 성격이 서로 다른 법률가들이 국제적 회의를 준비한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준비 담당자들의 지속적인 FAX·서신 교환을 통하여 일정과 주제 조정, 상대방 단체에 대한 사전 이해가 이루어짐으로써 원활한 교류회 준비가 가능하였던 것이며, 그 과정에서 때마침 일본에 유학중이던 임종인 변호사와 재일교포 인권운동가 서승 선생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었더라면 본 교류회가 기대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10) 일본은 많은 법률가단체가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에 '일한법률가교류회 실행위원회'라는 집행기구를 결성, 활동하였다.

11) 당시 민변회원이 강연한 모임은 다음과 같다.

1. 과도기의 한국인권상황과 금후의 전망
 - 강사 : 최병모 변호사
 -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 연락회 주최, 1994. 3. 29. 오사카PLP회관
2. 한국변호사가 말하는 국제연대로서의 개인 통보(B규약 제1선택 의정서)
 - 강사 : 이석태 변호사
 - 국제인권NGO네트워크 준비회의 주최, 1994. 3. 26. 오사카 PLP회관
3. 한국의 인권상황
 - 강사 : 천정배 변호사
 -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주최, 1994. 3. 29. 동경
4. 김삼석 김은주 남매 사건과 한국의 인권상황
 - 강사 : 이기우 변호사
 - 국제인권기금센타 주최, 1994. 3. 29. 오사카

3. 교류회의 내용

1) 일정

교류회의 일정은 첫째날인 1994년 3월 27일 15:00에 코베 효고중앙노동센터에서 형사분과, 노동분과, 국제인권분과로 나누어 약 3시간 정도 분과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저녁에는 친선 만찬이 있었고, 둘째날인 3월 28일은 오사카로 이동하여 10:00부터 신오사카시티플라자 호텔에서 일본의 변호사운동과 민주주의적 법률가단체에 관한 발제가 약 30분간 있었고, 이어서 “사법의 민주화와 그 극복과정”이라는 주제로 전체 회의가 진행되었으며, 중식을 겸한 간담회로서 교류회의 공식 일정이 종료되었다.

그 후 3월 28일 오후에는 오사카 재일한국인과의 간담회가 있었으며, 다음날부터 회원에 따라 관광, 동경인권단체방문,¹²⁾ 일본법정 및 변호사 사무실탐방 등을 하였다.

2) 분과회¹³⁾

(1) 형사분과

형사분과에서는 먼저 한국측에서 박성호 변호사가 “오편의 원인과 그 극복”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박성호 변호사는 오편이란 잘못된 유죄판결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후, 명백한 오류가 있는 판결은 물론이고 실정법상으로 유죄라 하더라도 역사적, 사회적으로 무죄라는 반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경우는 오편이라고 볼 수 있다며 오편이나 아니나는 실정법상의 판단을 넘어서는 역사적, 사회적 판단이어야 한다고 오편의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오편을

① 의도적으로 날조된 정치재판으로서의 오편 ② 사회적 편견으로 특정인에 대

12) 당시 방문한 일본의 인권단체로는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 일변연, 청년법률가협회, 일본 민주법률가협회, 일본애네스터, 일본국제법률가협회, 자유법조단 등으로 이를 단체의 목적과 성격, 활동상황 등 기본적인 사항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인권상황과 변호사 활동을 알려,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13) 분과회 및 전체 토의의 발제문은 한일 양국어로 사전에 번역되어 교류회 당시 배부되었으며, 토론 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한 박해의 일종으로서의 오편 ③ 재판 관계자의 과오로 말미암은 오편으로 유형화하여 각각을 예시하였다.

오편의 구조적 발생원인에 관하여 박성호 변호사는 한국이 근대 법치국가 성립에 실패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사법제도를 받아들였음에 기인한 사법제도의 반민족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성격과 역대정권의 법치경시 풍조라는 법제사적, 법사회학적 측면에서 오편의 발생토양을 살펴보고, 자백강요와 수사상의 인권 침해, 부실내용의 조서 작성, 짜맞추기 내지 조작수사 등 수사단계에서의 오편 원인과 검찰의 무분별한 공소제기를 오편 수사 및 기소과정상의 원인으로 설명하였다. 재판과정상 오편 원인에 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및 직접심리주의의 형식화, 무죄 추정의 법리 및 증거재판주의의 형해화, 변호인의 변론과오, 자유심증주의의 남용, 형사실체법상의 원인 등을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편의 극복방안에 관하여 발제자는 수사단계에서의 변호활동 강화,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정인 확보, 각종 불합리한 형사재판 실무관행 개선, 형사사법에 대한 민주통제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의 오편의 구제방법인 재심제도에 관하여 증거의 명백성과 신규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해석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에 일본측에서는 니와야마 히데오(庭山英雄) 교수(專修大學)가 “일본에 있어서의 오편, 원죄와의 싸움과 변호사·학자”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니와야마 히데오 교수는 형사소송법 전문가로서 일본의 당변변호사제도를 도입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고, 많은 원죄재판에 직접 참여한 바 있는 원로 교수라고 소개되었다.

발제자는 일본에서 원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폐전으로 천황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후이며 松川사건이 그 효시라고 설명한 후 ① 德島사건, 吉田사건, 免田사건 등 종전 후 1965년까지 일본변호사연합회(日辯連)에서 많은 원죄사건에 관하여 조사활동, 재심청구 및 변론활동, 범무대신과 검찰총장에 대한 경고 등 활동을 활발히 행한 시기, ② 帝銀위증체포사건(1965) 이후 어려워진 상황타파를 위해 白鳥사건을 중심으로 일변연 재심문체연구회, 형사재심제도연구회 등이 발족되어 변호사와 학자, 판사들이 협력하여 재심제도에 관한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1975년 白鳥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시기, ③ 白鳥사건 이후 현재까지 財田川사건 등 수많은 재심

사건들에 대하여 인용과 기각판결이 엇갈리면서 증거의 신규성과 명백성을 둘러싼 학설과 판례가 형성되어간 시기로 나누어, 일본에서의 원죄와 재심문제에 있어서 변호사와 학자들의 역할과 노력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다.

다음에 발제자는 재심과정에서의 일본 검찰의 각종 조직적 저항사례와 이를 극복해나간 과정을 榎井村사건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재심과정에서 변호인과 학자의 공동 노력과 여론 지지의 중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원죄 예방을 위해 대용 감옥의 금지와 당면변호사제도, 필요적 변론제도의 확대 등 방안을 제시하였고, 체포에서 압수수색, 피의자신문, 기소에 이르기까지 변호인이 원죄 예방을 위해 주안점으로 두어야 할 수사단계에서의 변호활동상 점검사항을 세분화된 목록으로 작성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쳤다.

두 발제자의 발표가 끝난 후, 주로 양국 변호인접견권의 법제와 실태, 재심제도의 운영실태, 재심인용의 경우 국가배상 내지 민사소송상의 문제 등에 관하여 많은 질문과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오판 원인에 관한 문제는 양국의 공통 문제임을 인식하고, 변호사와 학자 및 여론의 협력과 사법제도의 민주적 개혁으로 오판을 극복해나가야 한다는 공동 결론으로 형사분과 토론이 마무리되었다.

(2) 노동분과

노동분과에서는 한국측에서 이원재 변호사가 “최근의 고용조정문제와 근로자파견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발제자는 최근 한국경제에서 산업구조의 조정국면을 맞아 고용구조의 변화와 고용조정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근로 형태 중의 하나로서 근로자파견제도의 확산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어서 한국에서 근로자파견제도가 확산되는 배경에 관하여 기업이 근로자에 관해 지출되는 부착비용(附着費用)을 발생시키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적기에 유연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기구로서 임시 노동제도인 근로자파견제도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정리한 후, 근로자파견제도가 가지는 장점으로서 부착비용의 감소, 고용탄력성 증가, 신규 사업이나 특별 사업에서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 등을 들고, 문제점으로 고용관계의 안정성 파괴, 근로조건의 열악화, 상근 근로자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악영향 등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한국의 근로자파견제도 실태를 설명하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① 도입직종에 관하여 전문기술직보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정규 근로자를 대체한다고 여겨지는 직종이 많다는 점, ② 도입의 주목적이 근로자의 임금, 복지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 ③ 파견근로자들의 대부분이 1년 이상 장기근무하여 정규 근로자들의 대체로서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 ④ 파견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 산재보험, 고용안정성 등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고, 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자파견법안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① 적용대상업무, 파견기간과 사유가 법에 명시되지 않고 노동부령에 위임된 점, ② 중간착취의 위험성이 큰 일반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되지 않고 있고, 특정 근로자파견사업이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는 점, ③ 근로조건의 열악화 방지와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보장 규정이 없는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한국에서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향후에도 엄격한 제한하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일본측에서는 鶴飼良昭 변호사가 “일본의 기업사회와 고용조건”이라는 주제로, 脇田 교수(龍谷大學)와 渡邊 변호사가 “근로자파견법의 문제점과 파견 110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하였다.

鶴飼 변호사는 1991년 5월 일본의 경기후퇴 이후 계속된 전후 최장의 불황기간 동안 일본 노동변호인단이 고용조정에 관한 전화상담을 통하여 얻은 자료를 토대로, 46세 이상의 중년층에 대한 사직강요, 정리해고와 전직, 임금체불 등의 실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노동감독관 부족 등 감독행정의 후퇴, 정리해고와 전직에 관한 법규 미비, 노동조합의 체질악화와 조직률 열악 등을 일본에서의 고용조정 과정상 노동인권 침해요인으로 지적하였으며, 최근 일본 기업사회 의 노무정책을 특징짓는 ① 연공제에서 능력제로의 변화, ② 선택정년제, 조기 퇴직제 등을 통한 중년 노동자 축출, ③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 노동자의 활동증대 등을 정부의 노동력 유동화정책 및 노동법 규제 완화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어 脇田 교수와 渡邊 변호사는 1985년 제정된 일본의 근로자파견법에 대한 변호사들의 반대운동 경과를 설명하고, 일본민주법률협회가 법 시행 후 실태조사를 위해 설치한 ‘파견노동자의 고민에 대한 긴급 상담전화’와 ‘일하고

있는 부인의 고민 긴급 상담전화' 등에서 수집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한국 노동계가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일단 저지한 것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본 근로자파견법 제정시의 문제점과 노동인권 침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관해 설명하였다.

양국의 근로자파견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과 토론의 결과, ①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② 부당해고 제한과 파견사업소의 체불임금 보장 책임 명기, ③ 파견노동자와 파견처간의 단체교섭 인정, ④ 중간착취 금지 명기, ⑤ 적용대상 업무 축소 등이 필요하다는 데 동감하였으며, 근로자파견법은 제정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3) 국제인권분과

국제인권분과에서는 한국측에서 윤종현 변호사가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활용과 국내의 인권”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일본측에서는 高橋 변호사 외 5명의 변호사가 분담하여 “국제인권기구의 활용과 국내 인권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다.

윤종현 변호사는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국제인권규약 중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과 그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계기로 국내 인권상황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된 점을 설명하면서,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의 적절한 활용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다음에 유엔의 인권보호절차로서 B규약 선택의정서에 의한 개인정보제도, 유엔의 1503절차, 유네스코(UNESCO)의 통보절차, 국제노동기구에의 제소절차 등의 성격과 방법, 요건과 활용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한국의 인권침해와 관련된 활용실태로서 김근태씨 사건에 관한 B규약 위반 유엔인권위 제소, 유학생간첩사건 관련 장의균·김성만·황태권씨 사건에 관한 B규약 위반 유엔인권위 결의, 정신대문제에 관한 유엔인권위 산하 ‘현대적 형태의 노예제도 실무위원회’ 및 ‘차별 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에의 특별보고, 임수경·문규현 신부사건에 관한 유네스코에의 인권침해 통보, 전노협 등의 복수노조 금지 등 한국 노동관계법의 단결권 침해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제소와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11개항 권고 결의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마지막으

로 발제자는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와 전문인력 양성, 유효적절한 활용방법의 선택과 국제민간단체(International NGO) 활용의 중요성 등을 역설하였다.

일본측 발제자들은 먼저 국제인권조약에의 가입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일본이 ‘자유권 규약 제1, 제2 선택의정서’와 ‘고문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국제인권기구 활용의 역사와 실태에 관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투쟁 관련 국제노동기구 제소, 구금 2법 반대운동 관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및 유엔인권위의 활용, 외국인의 지문압捺제도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문제 등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A, B규약의 활용가능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다음에 일본 변호사들의 선택의정서 비준운동, 비엔나 세계인권회의에의 참가 및 제네바 국제규약인권위에서의 제3회 일본정부 보고서에 대한 일변연의 반박보고서 제출 등, 일본 변호사들의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에 관한 활동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발제 후 주로 한국의 선택의정서 비준 후의 활용실태에 관한 일본측 변호사들의 질문과 국제노동기구, 유엔인권위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경험에 관한 한국측 변호사들의 질문이 오간 후, 국제인권기구 및 규범 가입 비준운동과 그 적극적 활용은 양국의 인권향상을 위한 공동의 과제이며, 이는 인권운동의 국제연대활동으로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데 결론을 같이했다.

3. 전체 토론

전체 토론에 앞서 일본민주법률가협회 오노테라(小野寺) 사무국장은 약 30분 간 “일본의 민주주의적 법률가단체의 소개”라는 제목으로 일본 법률가단체의 연혁, 성격, 목적과 활동내용 등을 소개하면서,¹⁴⁾ 일본의 많은 법률가단체는 시대상황에 따라 탄생하여 활동해왔으며,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실현을 위해

14) 그 개요는 주 1) 내지 7) 참조. 한국의 민변에 대하여는 일정조정 관계상 한국측 참가들이 도착하기 전인 1993년 3월 27일 14:00에 박찬운 변호사가 “민변의 현황과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일본측 참가자들을 상대로 약 30분간 민변에 대한 소개의 시간을 가진 바 있다.

노력해왔음을 강조하고, 오랜기간 법률가단체가 지속·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은, 사법연수생에 대한 계승 노력과 민주법률가운동 성과의 반영으로 인한 변호사회의 민주화가 중요한 두 조건이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시작된 전체 회의의 한국측 발제자로서 나선 유선호 변호사는 “사법의 반민주적 요소와 그 극복과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발제자는 한국에서 30년간 계속된 군사독재권력하에서 왜곡되어간 사법권의 독립문제를 설명하고, 문민정부와 함께 시작된 사법부 개혁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후, 사법의 비민주적 요소로서 ①국가보안법·노동조합법·사립학교법·집시법·보안관찰법 등 반민주악법, ②대공수사기구의 비대화로 인한 사법 관련기관의 위치 전도, ③형사소송법상의 비민주적 요소 및 비민주적 활용실태, ④법관의 인사제도 등을 들고 설명하였다.

다음에 이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으로서, 한국 국민의 저항운동과 변호사 활동의 역사, 악법개폐운동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현재 문민정부하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법발전위원회의 사법부 개혁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일본측에서는 사카구치(阪口) 변호사가 “일본의 사회개혁과 변호사·변호사회 운동”이라는 제하에 발표를 하였다. 발제자는 일본이 패전 후 절대주의 천황제하의 비민주적 요소들을 사법개혁을 통해 극복해나간 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중 미국의 일본점령정책의 급속한 전환으로 인한 사법의 반동화에 대하여 자유법조단을 중심으로 벌인 대중적 재판투쟁, 사법부의 보수화를 반영한 1964년의 임시사법제도조사회의 사법제도 의견서(약칭 臨司意見書)에 대한 일변연의 반대운동과 사법연수생운동¹⁵⁾ 등에 대하여 언급한 후,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대해 설명하였다. 발제자는 당시 사법반동 저지운동은 종래 일변연의 법조일원화운동 등이 일변연 상충부의 운동에 불과했던 점에 비해 젊은 일반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한 운동으로서 국민과 함께 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한 후, 그 과정에서 일변연도 조직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게 된 점을 지적하였다.

그밖에 1950년대의 노동변호사운동, 1970년대 이후의 ‘시민파변호사’ 운동 등을 설명하고, 공해·인권·소비자문제에 관해 국민운동과 밀접하게 결합하여

15) 발제자인 阪口 변호사는 자신이 사법수습생으로서 靑法協 활동중 과면당한 경험이 있는데, 阪口司法修習生 과면사건이 그것이다.

이루어진 시민파변호사운동은 변호사회의 운동을 강화·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일변연이 각종 조사활동과 보고서 작성, 법률안 제언¹⁶⁾ 등 입법운동과 악법 방지 활동¹⁷⁾ 별여나가게 된 점을 강조하고, 현재도 일변연은 범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문제, 과로사문제, 행정감시음부즈만제도, 증권투자 피해문제, 법조개방 문제 등에 관해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운동은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현장고발을 시작으로 피해자 구체의 구체적 방안을 국민과 함께 모색해나간다면 더욱 성공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 과정에서는 일본측에서는 주로 한국의 법관 및 헌법재판소의 인사제도, 수사권 남용사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변호사회 및 일반 시민들의 입장 등에 관하여, 한국측에서는 일본 사법반동화의 실태, 법조개방에 대한 일변연의 대책, 사법에의 시민 참여과정과 유도방법, 과거 일본에서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경험과 극복과정, 범죄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의 실상과 대책 등에 관하여 상호 질문과 답변이 오갔으며, 인권의식과 사법의 민주화는 그 사회의 인권보장 정도의 척도가 되며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여기에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 법률가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하고 내실있기를 기원하면서 전체 회의가 마감되었다.

4. 관서지방 민족운동단체와의 교류

오사카 재일한국인들과의 간담회는 금번 한일변호사교류회의 일정은 아니었으나, 민변의 일본방문 공식일정 중의 하나였으므로 이에 언급하기로 한다.

오사카 한인교회인 KCC회관에서 1994년 3월 28일 15:00에 시작된 ‘한국 민변과 일본 관서지방민족운동단체와의 교류회’는 앞서 잠시 언급한 대로 민변의 일본방문 일정에 관심을 가진 재일교포민족운동단체 및 민족운동가들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으로, 민변에서는 토의결과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

16) 환경보전기본법안(1973), 환경엑세스먼트법안(1977), 湖沼지대환경보전법안(1983), 水俣病 특별조치법안(1986) 등이 있다.

17) 형법, 국가기밀법, 구금2법 등에 대한 악법 방지 활동이 그 예이다.

여 조총련을 제외한 모든 민족운동단체 및 민족운동가와 교류회를 가지기로 결정하였다.

교류회는 재일교포의 민족문제와 인권문제에 관한 민변 변호사들의 이해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교포들의 빌제가 있은 후 참가자 소개 및 상호 질의응답·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제1발제자로 월간『미래』편집자 고찬유씨는 “재일교포의 역사와 현황”이라는 제하에 한일합병 이후 김영삼 정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변화와 재일교포들의 역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해방 후 한반도 분단의 영향으로 재일교포사회가 분열된 점과 남북한의 화해무드 때마다 교포들은 좌우익을 초월하여 협력·활동해온 점을 지적하였고, 조국의 화해와 통일없이는 재일동포사회의 단결과 권익신장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역설하였다. 나아가 阪神교육투쟁, 출입국관리령과 외국인등록법 제정, 한일기본조약 체결과정을 거치며 겪었던 재일동포들의 인권침해사례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재일동포의 조국에 대한 애착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이를 계속 방치한다면 더이상 귀화자들에 대해 민족적 비난을 가할 수 없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제2발제자로서 聖和사회관 관장 김덕환씨는 “재일동포의 법적 사회적 지위”라는 제하에 1991년 한일간에 이루어진 ‘한·일법적지위협정’에 기반한 협의 결과에 관한 각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재일동포들의 지위와 법적 문제점에¹⁸⁾ 대하여 설명하고 교포 5세가 태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재일한국인의 정당한 법적 지위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3발제자로서 민족교육촉진협의회¹⁹⁾ 강성률씨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이라는 제하에 재일동포 2세, 3세들이 전체 재일동포의 9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한민족의 긍지를 가지고 떳떳이 살아가기 위해 민족교육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강조하였다. 이어서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역사에 관해 1948년 일본 문부성의 조선인민족학교폐쇄령과 이에 대한 阪神교육투쟁을²⁰⁾ 소개하고, 해방 직

18) 위 각서 이후에도 재류자격 심사와 재입국 허가, 강제퇴거제도 등으로 재일동포들은 원천한 영주권을 얻고 있지 못하며, 지문날인제도와 외국인등록증 상시휴대제도 등은 약간 완화되어 시행될 뿐, 제도 자체는 온존하고 있고, 공무원 채용, 참정권, 연금제도, 교육권 등에서 여전히 법적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19) 오사카부에 있는 민족학급 강사들과 일본학교에서 일하는 동포교원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민족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20) 阪神교육투쟁은 문부성의 조선인민족학교폐쇄령에 항의하여 재일동포들이 전국적으로 반대

후 동포학생 중 약 50%가 민단 또는 조총련계의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음에 비해 현재는 약 12%만이 건국학교, 금강학교, 조선학교 등 민족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그나마 9.6%를 담당하는 조선학교는 학교교육법상 각종 학교로 되어 있어 제대로 보조금조차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으로 되었는바, 그 원인은 재일한국인의 문제를 방기한 한일조약과 일본정부의 계속적인 동화정책에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그나마 뜻있는 몇몇 청년들이 얼마 안되는 일본정부의 보조금으로²¹⁾ 여려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공립학교 내 동포학생들을 상대로 민족학교를 운영해나가고 있는 점을 설명하였다.

제4발제자로서 재일한국민주인권협의회²²⁾ 고정신씨는 “재일동포 정치법문제”라는 제하에 군사독재정권 아래 조국에 유학을 갔다가 간첩으로 구속된 사람이 총 1백 명이 넘는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직까지 수감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딱한 사정을 호소하고, 특히 10년 이상 수감생활에 고령과 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손유형씨의 석방을 위해 민변에서 노력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제5발제자로서 범민련의 강종현씨는 분단된 조국을 가지고 과거 식민지종주국에서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교포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동포들은 동화정책에 대하여 우리말과 문화를 지켜내고 언젠가는 조국이 통일되고 조국도 재일동포들을 영원히 버려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강조한 후, 남북의 조국이 남북합의서를 실천하여 재일동포들의 조국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민변도 조국의 통일문제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였다.

그밖에 재일한국청년동맹,²³⁾ 민주여성회,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 교육문화센

운동을 전개하던 중, 동포들 밀집지역인 大阪과 神戶에서 1948년 4월 격렬한 반대투쟁을 한 사건으로, 향의집회중 16세의 김태일 소년이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미군정하에서 유일하게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으며, 동포 1,700여 명이 체포되었다. 그 후 6월 4일 동포대표와 오사카부지사간에 일본공립학교 내에 민족교육을 과외수업 형식으로 행하게 하는 ‘민족학급’을 설치하기로 한 각서가 교환되어 수습되었다.

21) 오사카시의 경우 민족학급 보조금으로 24개 학급에 연간 430만 엔을 지급하므로 1개 학급에 월 1만 5천 엔 정도 보조하는 셈이라고 한다.

22) 재일한국인민주인권협의회는 1990년 결성되었으며 ① 재일한국인정치법석방운동과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 확립에의 기여, ② 재일동포의 인권옹호, ③ 민족의 자주적 평화통일, ④ 반전 반핵 평화운동 등을 이념으로 하고, 실태조사·후원·국제회의 파견·보고서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외국인노동자문제·환경문제 등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관지로서 월간 「민권협뉴스」를 발간하고 있다.

터, 재일동포변호사회,²³⁾ 삼민회²⁴⁾ 등 크고작은 여러가지 성격의 민족운동단체들이 자신들이 벌이고 있는 민족운동에 관해 소개하였다.

민족운동단체와의 교류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변 변호사들을 그들의 진지함과 처절한 노력에 관해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재일동포들의 지난한 역사와 민족운동에 흘린 피와 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들의 인권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닌지, 나아가 재일동포 문제의 상당부분이 당사자들의 민족의식 결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폐도하였던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으며, 이들이 겪는 아픔과 분열의 원인은 오히려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조국측에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대해 바라는 것은, 교민청의 신설이나 자금지원과 같은 형식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남북정부가 각자 정권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포사회를 도구화하여 이용하지 말고, 온갖 수모 속에 자라나 조국을 찾아간 교포학생을 정치적 목적으로 '간첩'으로 만들지 말며, 제야인권운동을 하는 재일동포들도 차별없이 조국방문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등 소박하면서도 질질한 것이었다.

재일민족운동단체와의 교류회를 통하여 민변회원들로서는 많은 점을 느끼고 생각하게 되었으며, 향후 민변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된다.

5. 맷음말

이번 한일변호사교류회에서 참가하면서 필자가 느낀 소감을 정리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우선 한국과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공식적으로 만나 공통의 주제를 가

23) 재일한국청년동맹(한청)은 1945년 11월 16일 재일본조선인연맹(조련, 조총련의 전신) 노선에 반대하여 탈퇴한 민족주의자들이 결성한 재일본조선건국촉진청년동맹(건청)의 후신으로, 건청은 이승만정권 당시 대한청년단 일본지부로 조직 변경되었다가 4·19와 더불어 현재의 한청으로 다시 결성되었다.

24) 현재 약 20여 명 정도의 재일동포변호사가 있다.

25) 자녀들의 민족교육과 동포 자녀들간의 교류에 관심을 가진 OB그룹 모임

지고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활동에 대하여 토론하고 상대방의 경험과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인권개념의 국제화시대에 각국 인권운동의 수준향상과 인권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국 변호사들은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들의 과거 경험을 들으며 실무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측면이 있으나, 그들의 현재 모습을 우리의 미래로 보아야 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장기간 계속된 보수화와 안정,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반드시 건강하다고만은 볼 수 없는 일본사회의 모습에서 불의와 부조리에 대한 분노, 모순에 대한 변혁의지는 대중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된 채 어쩌면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운동 또한 거대한 보수사회의 메커니즘의 한 부분으로 정착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나라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변혁운동권에서 보여지는 여러가지 모습들을 떠올려보게 될 때 이러한 상념이 들면서도,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며 시민 속에 녹아들어가 작지만 중요한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권의 열매들을 거두어들여왔다는 점 때문이다.

교류회를 전후하여 계속 문제가 제기된 교류상대방의 확정문제는 실무상으로는 우리의 과제와 그에 따른 교류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한다고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가 교류상대방의 확정문제를 보면서 정작 느껴야 할 점은 일본의 진보적 법률가들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하여 '법조'라는 틀을 과감히 깨고 필요에 따라 학자들과 연수생, 노동조합과 언론인 및 일반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여 함께 활동을 해왔다는 점일 것이다.

향후 한·일간 진보적 법률가교류회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고 적절한 교류형태를 모색해감으로써 우리나라 인권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 (변호사)

반년간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제3호	
발행인	장두환
편집인	홍성우
등록일	1993년 12월 1일
등록번호	사-1681
인쇄인	김기두
인쇄소	(주)농원문화인쇄
발행소	역사비평사 서울시 중구 필동 전화 279-0157, 0158 팩스밀리 277-3488
발행일	1994년 6월 30일
값	7,000원

민주적인 법제도의 정착과 자유로운 인권 보장을 위한 '역비 법과 사회 11'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

서울지방변호사회

‘죄’를 지었으니 무슨 ‘벌’이라도

톡톡히 받아야 한다구요?

그러나 70년 전 일제하에서 만들어졌던
감옥법이 현재까지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옥에서의 인권 수준이 그 나라 인권의 참모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행정제도가 곧 현대 문명국가 인권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법의 수준은 어떠하고 우리의 행정 현실은 어떠한지,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행정과정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을 서둘러야겠습니다.

